

순천대학교 소통과 협력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9. 6.

개정 2019. 2. 13.

개정 2020. 2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소통과 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내·외 소통·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 2.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·해결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·이행여부
 3.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
 4.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기획처는 소통과 협력 민원 창구를 설치·운영하며,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접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[전문개정 2019. 2. 13.]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을 포함하여 학내·외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, 교수회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단장, 미래융합대학장, 직원연합회장, 총학생회장이 된다.(개정 2019. 2. 13., 2020. 2. 27.)
- ③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기획평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③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1. 총장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
 2. 소통과 협력 창구 민원 사항이 있거나,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(개정 2019. 2. 13.)
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안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.(신설 2019. 2. 13.)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1. 소통분과위원회

2. 제도개선분과위원회

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'분과위원장'이라 한다.)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[전문개정 2019. 2. 13.]

제8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,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(개정 2019. 2. 13.)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12. 9. 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2. 1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2. 27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(생략)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순천대학교 소통과 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미래전략단장”을 삭제한다.

⑧ 생략